2020. 2학기 중간(기말)시험 관련 부정행위 금지 안내

2020. 2학기 진행되는 중간(기말) 시험과 관련하여 공정성 확보와 정당한 학생 평가를 위하여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사지원과(교육지원과)는 시험기간 동안 학생 커뮤니티 모니터링, 학생 제보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리시험 및 답안 공유와 같은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시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정행위 유형

- ❍ 타인의 시험지, 답안지를 보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
- ❍ 시험 답안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카톡 등으로 전달하는 행위(답안지를 촬영하여 사진을 주고 받는 경우 포함)
- ❍ 대리 시험에 응시하거나 응시 청탁하는 행위
- ❍ 감독관의 시험 진행 관련 지시에 불응 또는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 수강신청 관련 부정행위 적발시 조치사항

- ❍ 학생 소속 대학/학과에 부정행위 사실 통지
- ❍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 ❍ 부정행위 해당 과목 해당 학기 성적 무효 처리

□ **신고 방법 :** ① 이메일 ace@kangwon.ac.kr ※ 불법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② 방문/유선 신고

□ **문의 사항 :** 춘천) 학사지원과(250-6017), 삼척) 교육지원과(570-6425)

□ 관련 학칙 및 규정

학칙

제99조(징계) ①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대학(부) 교수회(대학원생의 경우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부)장 또는 해당 대학원장이 징계처분 한다.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2절 수험 부정행위

제19조(유기정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험부정을 한 자는 유기정학에 처한다.

1. 벽, 책상, 신체일부 등에 메모해 두었다가 이를 보고 답안 작성한 자
2.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불러주는 것을 받아쓴 자
3. 타인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자
4. 참조가 금지된 서적, 노트 등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자
5. 소형, 모의 답안지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계획한 자
6. 자기의 시험 답안지룰 찢거나 오손하여 못쓰게 만든 자
7.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제20조(장기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는 21일이상의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사전에 작성된 답안지를 제출한 자
2. 대리 응시를 한자와 응시하게 한 자
3. 시험장 외부에서 답안을 작성하여 투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자
4.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한 자
5. 자기가 작성한 답안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한 자, 또는 타인이 작성한 답안지에 자기의 성명을 기재한 자
6. 감독관의 검인을 위조하거나 훼손한 자
7. 타인의 답안지를 찢거나 오손하여 못쓰게 만든 자
8.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

제21조(무기정학 또는 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자는 무기 정학 또는 제명에 처한다.

1. 제19조 폐지, 제20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재범한 자
2. 타교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의 시험을 대리 응시케 한 자
3. 수험장에서 고성 또는 난폭한 행동으로 시험을 방해하거나 집단 수험거부를 선동한 자
4.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제22조(수험부정행위 부가 처벌) 학점 취득과 관계있는 시험중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과목의 해당학기 성적은 무효로 한다.